

##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속기록

2023년 5월 3일 (수) 오후 6시  
서울대학교 39동 B103호(BK홀)  
속기 : 이석현, 김대현, 정승현

### 출석 확인

참석 : 공대 정, 공대 부, 건축 1학년, 건환 정, 건환 부, 건환 부(학생회칙 제16조 제1항 2호에 따른 복수 대의원 인정), 건환 2학년, 건환 1학년, 기계 정, 기계 부, 기계 2학년 A반, 기계 2학년 B반, 기계 1학년 A반, 기계 1학년 B반, 기계 1학년 C반, 산공 정, 산공 부, 산공 부(복수 대의원), 산공 2학년, 산공 1학년, 예자 정, 예자 2학년, 예자 1학년, 원핵 정, 원핵 부, 원핵 4학년, 원핵 1학년, 재료 정, 재료 부, 재료 부(복수 대의원), 재료 2학년, 재료 1학년, 전기 부, 전기 3학년 R반, 전기 3학년 롤루반, 전기 1학년 R반, 전기 1학년 랄라반, 전기 1학년 C반, 조선 정, 조선 2학년, 컴공 정, 컴공 부, 컴공 4학년, 컴공 3학년, 컴공 2학년, 컴공 1학년, 항공 정, 항공 2학년, 항공 1학년, 화생 정, 화생 부, 화생 2학년 A반, 화생 2학년 B반, 화생 1학년 Acid반, 화생 1학년 Base반, 광역반

불참 : 건축학,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축 2학년, 기계 2학년 C반, 산공 4학년, 산공 3학년, 예자 부, 원핵 3학년, 원핵 2학년, 전기 정, 전기 4학년 R반, 전기 4학년 롤루반, 전기 4학년 랄라반, 전기 4학년 C반, 전기 3학년 랄라반, 전기 3학년 C반, 전기 2학년 R반, 전기 2학년 롤루반, 전기 2학년 랄라반, 전기 2학년 C반, 전기 1학년 롤루반, 조선 4학년, 조선 3학년, 조선 1학년, 항공 부, 화생 2학년 C반

재적 단위 83명 중 57명 참석으로 18시 14분 개회

### 통과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공대 정 : 통과 안건 1번, 자료집 상으로 5페이지 봐주시면 될듯.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진행하겠음.

공대 정 :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통과안건 2. 대의원 확정

공대 정 : 이어서 통과 안건 2번, 자료집 상으로 6페이지 참고 바람. 소집 공고 대상 대의원 및 제21차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부대표 8명과 임시 대표 1인이 자료집 상의 대의원임. 이상으로 83명의 대의원을 이번 상반기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확정하고자 함.

공대 정 : 혹시 6페이지, 7페이지 명단에 없으신 분 있는지?

산공 정 : 6페이지, 7페이지가 명단이 아닌듯함.

공대 정: 제가 pdf 상의 쪽수를 읽었는데 그렇다면 지면 상의 번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3페이지, 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음.

공대 정 : 누락된 인원 없다면 통과안건 2번, 대의원 이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음.

## 통과안건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공대 정 : 자료집 5페이지부터 시행세칙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있음. 제1조 시행 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제2조 회의 진행의 원칙, 제3조 회의 용어 그리고 제4조 안건의 종류, 제5조 이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해질 발언의 종류 명시함. 제6조 의사조정위원회는 의사 진행 관련하여 조정하는 기구로 봐주시면 될듯, 의사 조정 일어날 시에는 제6조 명시된 인원대로 위원회 진행함. 제7조 회의 순서 나와있고요, 제8조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 제9조 안건 제출, 의안 발의, 안건 상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임. 다음 9페이지에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찬반토론, 표결, 예결산 심의에 관련된 조치가 명시됨. 이상으로 통과안건 3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넘어가겠음.

## 통과안건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공대 정 : 통과안건 4번은 공학대회 안건 채택의 건임.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 안건의 경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전에 집행위원회와 학생회장단 등이 제출한 안건 상에 의한 것이고, 논의 및 의결 안건의 경우에는 제21차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임.

## 통과안건 5. 회의진행 순서 통과

공대 정 : 이어서 통과안건 5번은 방금 말씀드린 통과안건 4번의 안건들을 5번의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임. 보시면 알겠지만 4번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함.

공대 정 : 이것으로 통과안건에 대한 발제 마치겠음.

## 보고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공대 정 : 보고안건 1번의 경우에는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위원장님이 발제해주실 예정임.

집행위원장 :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조예나임.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를 시작하겠음. 먼저 집행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드림> 집행위원회는 총 3개의 기수로 나누어 운영되며 새로운 기수가 시작될 때마다 집행위원의 교체가 이루어짐. 표1-1을 보시면 학생회장단 목록이 있고 표1-2에는 1기 집행위원장 및 부집행위원장, 팀장단 구성이 있으며 표1-3에는 1기 집행위원회 구성이 있음. 표1-4에는 2기 집행위원장 및 팀장단 구성, 표1-5에는 2기 집행위원회 구성이 있음. 13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면 되며 확인하실 시간 1분 드리겠음. 질문 사항 있으신 경우 본인 소속과 직책 말씀해주시고 질의 바람.

집행위원장 : 따로 질의사항 없으신 듯 하여 다음 보고안건인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보고로 넘어가겠음.

## 보고안건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집행위원장 : 활동 보고 시작하겠음. 중점 사업으로는 4년 만에 대면 숙박형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하였고 공과대학 동아리 TF를 개설하여 동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교육연구 환경개선위원회에 참석하였음.

집행위원장 : 다음으로 집행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음. 1기 회장단 집행단에서는 월간 문화 12월, 복수전공 및 자유전공학부 전공진입생 학생회원권 부여, 공과대학 학생회 Notion 개설, 제휴 사업 그리고 광역반 학생회 제반 사업을 진행하였음. 1기 D팀에서는 학생회 카톡 채널 활성화, 흡연 구역 정비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1탄 및 파이데이 행사를 진행하였음. 1기 R팀에서는 대신 만나드림(랩인턴 및 기업인턴 인터뷰), 강의실 예약 제도 개선 그리고 모바일 지도

업데이트 사업을 진행하였음. 1기 E팀에서는 신양학술정보관 시설 개선 설문조사 및 월간 진로 3월을 진행하였음. 2기 회장단 및 집행단에서는 윗공대 식당 만족도 조사, 월간 문화 4월, 교내 와이파이 접속 문제 대응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 중간고사 간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추후 대응 예정임. 2기 D팀에서는 월간 진로 5월과 병역 백서 배포 사업을 진행 중이며 2기 R팀에서는 창업 백서 배포와 배리어프리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2기 E팀에서는 월간 진로 4월을 진행하였고 모기 퇴치 사업인 모기 잡아드림을 진행 중에 있음. 2기 A팀에서는 월간 진로 6월과 월간 진로 7월 준비 중에 있으며 2기 M팀에서는 공과대학 체육대회와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2탄 사업을 진행 중임.

집행위원장 : 보고 내용이 길어 약 5분 정도 읽을 시간을 드리겠음. 페이지는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임.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 소속과 직책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시면 됨.

집행위원장 : 질의 사항이 없으신 듯하여 학생회 활동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음. 다음 보고안건은 새맛이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임. 해당 보고안건은 새준위장을 맡으셨던 부학생회장 박선호 학우께서 진행해주실 것임.

### **보고안건 3. 2023 공과대학 새맛이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공대 부 : 2023 공과대학 새맛이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시작하겠음. 1번을 보시면 위원 구성에 대한 표가 나와있고 2번은 활동 내용에 대해 첨부하였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23 공과대학 새맛이 준비위원회는 2023 공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기구로서 4년 만에 진행되는 대면 숙박 새터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음.

공대 부 : 입학 후 단과대 규모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만큼 공과대학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과, 부, 반 단위의 단합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아래에는 공과대학 새맛이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했던 활동들에 대해 첨부하였음. 열전새터, 단체게임, 동아리공연, 학장단 토크 콘서트 및 엔믹스 특별 공연, 과가 제창 및 과별 영상 시청, 책자 제작, 방역 및 안전사고 대비, 기업체 후원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1번과 2번에 대해서 읽으실 시간 약 2분 정도 드리고 질의 또한 받도록 하겠음.

공대 부 : 혹시 추가적으로 시간 필요하신 분 있는지?

산공 정 : 활동 내역 8번에서 새터 1일차 저녁에는 상쾌환을, 2일차에는 몬스터 음료를 배부하였다고 했는데 실제 새터 갔다온 입장에서 배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대 부 : 상쾌환과 몬스터 협찬은 기획사를 통해 진행되었음. 이때 물품이 당일에 배송이 된 관계로 저희가 원활하게 모든 반에 일괄적으로 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1일차에 먼저 가능한 반대로 상쾌환을 배부하였고 2일차에 상쾌환을 배부받지 못한 반을 우선적으로 몬스터 음료를 배부하였음.

공대 부 :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

화생 정 : 답변 주신 내용에서 가능한 반만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가능한 반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을지?

공대 부 : 저희가 배부를 스태프 방에서 시작하였는데 저희가 2, 3, 4층을 객실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스태프 방이 있던 2층부터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였고 3층의 경우에는 일부만 배부가 되었어서 그 다음 날에는 3, 4층 위주로 몬스터를 배부하였음.

항공 정 : 일단 3번 동아리 공연 진행에서 22개월로 되어있는 부분 오타인 것 같아서 수정하면 좋을 듯함. 공연했던 동아리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 차라리 숙박을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서 동아리 공연 하신 분들을 숙박시키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면 좋을듯함.

공대 부 : 처음 새준위장단 차원에서 동아리 숙박을 논의할 때 예비비를 잡아놓은 부분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이 안되었는데 동아리 숙박의 경우에는 안주 및 주류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동아리 인원이 한분씩 늘때마다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시 적자가 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기에 불가피하게 동아리 인원에게 대해 숙박을 제한하게 되었음.

화생 정 :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했을 때도 적자를 우려해서 동아리 분들이 숙박을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 그때는 가능했는지?

공대 부 : 일단 기본적으로 4년 전과 비교하여 적자가 대부분의 이런 숙박 행사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숙박 리조트 업체에서 기존에는 한방에 정원의 2배를 넣을 수 있었다면 저희는 코로나 상황때문에 정원보다 1.2배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던 상황이라서 무조건 적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었음.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공연 인원들이 다 숙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그 상황과는 별개라고 생각했기에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였음.

공대 부 : 질의 더 있으신 단위?

공대 부 : 질의 더 없는 것 같아 활동 보고 4번인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로 넘어가겠음. 이 부분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인 나세민 학우께서 발제해주실 예정.

#### 보고안건 4.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공대 정 : 자료집 26페이지 봐주시면 될듯함.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시작하겠음. 2023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는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 제16차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설치되었고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 그 구성이 인준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음. 해당 회·세칙특위가 설치된 목적은 제16차 운영위원회 별첨 자료에서 말씀드린 바 있음. 간단하게 4가지 그 제목만 읽어드리자면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한계점 개선, 두번째는 반학생회의 복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세번째는 연합전공생 회원권 인정 여부 검토, 네번째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 이 4가지를 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외에도 현행 학생회칙 및 부속 세칙을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면 회·세칙특위에서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음. 이어서 27페이지에서 설명드리자면 회·세칙특위는 앞서 말씀드린 목적 첫번째인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논의하는데 있어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대중모집을 진행하고 회칙 및 세칙 검토 경험이 있는 학우분들을 호선하여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회·세칙특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인원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 다른 목적까지 논의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판단하여 목적 1번만을 논의하기 위해 회·세칙특위 내부에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을 설치하였음. 회·세칙특위의 구성은 27페이지 중단에 표로 작성하였고, 특위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을 제외한 회·세칙특위는 앞서 말씀드린 목적 2번, 3번 그리고 특위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를 4회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그때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타 회칙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개정안을 작성, 검토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학생회칙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21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목적 1에 대한 개정과 전체 특위에서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던 목적 4, 5에 대한 개정안을 시간 여유를 두어 충분히 논의한 후 개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 공학대회 등으로 발의를 연기하였음.

공대 정 : 이하 회·세칙특위 활동 내용 보고였음. 관련하여 질의 있는 단위? 1분 정도 기다려보겠음.

#### 18:37 산공 3학년 입장

공대 정 : 질의 없으신 것 같아 보고안건 여기까지 다루고 인준안건으로 넘어가겠음. 오늘 공학대회는 한 건의 인준안건이 있는데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위원장님께서 발제해주실 예정임.

## 인준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집행위원장 : 인준안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음. 인준안건은 찬반 없이 질의 후 표결로 진행되며 인준되지 않은 건은 집행위원회에서 활동 계획을 수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됨. 30쪽부터 40쪽에 각 사업에 대한 목표, 진행 시기 및 세부 계획 그리고 예산 항목을 첨부하였음. 확인하실 시간 약 3분 드리겠음. 확인 후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 바람.

재료 부 : 35페이지에서 월간진로 5월 멘토링 데이에서 식사, 연사비, 기념품비, 장소 대여비로 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사 분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섭외해서 이러한 지원금이 책정되었는지가 궁금함.

공대 부 : 월간 진로 5월 행사의 경우에는 여덟 분의 연사를 모시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 예산을 책정하였고 학장단 분들도 모두 참석하실 예정이라서 학장단 포함 연사분들, 연사 한분당 7-8명의 멘티 분들과 함께 모두 5만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됨. 그래서 최소 80명의 멘토, 멘티, 그리고 학장단 분들, 당일에 참여하시는 스태프 분들까지 포함한 식사 예산이 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듯함.

전기 3학년 롤루반 : 식사가 어느 형태로 진행되는지?

공대 부: 월간 진로 5월 행사는 e라운지를 장소로 섭외한 상태임. e라운지에 있는 중식과 양식 메뉴를 각 멘토에게 선택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각 메뉴를 멘티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형태로 제공될 예정임.

집행위원장 : 추가 질의 있는 단위?

화생 정 : 39페이지의 공과대학 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쭙볼 게 있음. 혹시 푸드트럭 설치가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지?

공대 정 : 본 행사가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므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장소를 알아보고 있음. 아마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전력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음. 관련 최종 장소는 아마 추후에 공지될 것 같음.

화생 정 : 제가 알기로는 시설사용수칙 서약서에 종합운동장 내에서 취사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측과 협의가 된 것인지?

공대 정 : 우선 해당 시설사용 협약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음. 스포츠진흥원에 문의해봤는데 취식 및 취사 행위를 종합운동장 필드 내에서 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라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인근 새길 인근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취식의 경우에도 종합운동장 내에 쓰레기 발생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음.

집행위원장 : 약 3분이 지났는데 혹시 더 시간 필요하신 단위?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나 인준에 반대하는 단위 있는지?

집행위원장 :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서 박수로 인준하겠음.

## [인준안건 1] 만장일치 찬성으로 인준

### 논의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

공대 정 : 논의 및 의결 안건 발제하도록 하겠음. 총 4가지 있으며, 첫번째의 경우에는 지면 기준 41페이지 봐주시면 될듯함. 안건 제목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임. 개정 취지 및 신규 조문 대조표가 나와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우선 개정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음.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4조에 따르면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때 회칙 개정을 제외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최고 결정 기구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나 공과대학 외 타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각 단위 학생회장만으로 구성되는 만큼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또한 그 구성을 학부, 과, 반, 전공의 학생회장만으로 축소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음. 또한 총학생회칙 제31조 제3항과 같이 학생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부학생회장 1인에게 그 권한을 임시로 위임할 수 있는 조항 또한 추가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그동안의 운영위원회에서 각 안건에 대한 학부/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가, 부 표결 여부가 대부분 합치해온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안건의 효결 결과가 각 단위에서 참석한 운영위원 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본 개정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각 학부, 과, 전공, 반 학생회장만으로 축소한다면 표결의 공정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이어서 위 개정 취지에 따른 신규 조문 대조표를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음.

공대 정 : 42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람. 우선 제25조, 제29조에 대한 신규 조문 대조표임. 각 조항에 대한 개정 취지 또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음. 제25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부학생회장이 제외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제25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학생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였음. 이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개정 취지에 따른 조항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축소하고 총학생회칙 제31조 제3항처럼 임시로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임. 이어서 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조항은 우선 작년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때 반학생회 내용이 추가된 것이 비해 해당 조항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에 해당 조항 제목에 반을 추가하고자 하였고, 본 안건의 개정 취지대로 마찬가지로 부학생회장 위임을 제외하고자 하였음. 제59조의 연석회의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맞게 부학생회장 내용을 제외하고자 하였음.

공대 정 : 이렇게 총 3가지 조항들에 대한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논의 및 의결 안건은 우선 질의발언을 받고 그 후 찬성 및 반대 발언이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우선 1번 안건에 대한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음.

재료 부 : 개정 취지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회칙을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이외에 회칙 개정으로 인한 뚜렷한 이점이 있는지?

공대 정 : 질의주신 내용은 앞서 개정 취지에서 설명드렸음. 본 안건의 개정 목적은 두 가지 인데 우선적으로 재료 부님께서 말씀해주신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고 이 외에 개정 취지 두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의 학생회장단 의견이 합치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한 단위에서 출석한 대의원 수에 따라 그 표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기에 그러한 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산공 정 :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 부학생회장도 학과 학생들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직책인데 그분들의 대표성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닐까 우려되고, 두 번째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의견이 대부분 합치하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졌을 때 인원이 많아졌을 때 그쪽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동안 항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의견이 합치해왔다고 완전히 다 단정짓거나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음. 회장과 부회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의견을 한명만 받게 된다면 공정한 회의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공대 정 : 두가지 문제 지적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부학생회장을 제외해 구성을 축소하더라도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이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총학생회칙 제31조를 채택하여 신설한 제29조에 의한 것임. 이 조항을 통해서 부학생회장 또한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두번째로 질의해주신게 학생회장단의 의견 합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동안 통계적으로 각 단위 학생회장단의 표결 여부가 합치해왔던 점을 근거하여 말씀 드린 것은 아니었음. 그동안의 통계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합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기 보다는 현재 운영위원회 구조 상 학생회장단이 둘 다 참석하기 때문에 의견이 합치하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임.

산공 정 : 두번째는 이해가 됐는데 첫번째는 총학생회칙의 어떤 조항을 참고하신 것인지 질의 드림.

공대 정 : 개정 취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나 공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각 단위 기층 단위의 학생회장만을 운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황을 참고하였을 때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적으면서 필수 대의원인 학생회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축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하였음.

재료 부 : 다른 단과대에서 회장만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공대에서 부학생회장까지 규정한다 해서 그게 제도적인 결함이나 그런 쪽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나 싶은게 제 생각이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와 두번째는 회장단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여서 운영위원회 참여 인원 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어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 날짜를 정할 때 모든 학우분들이 참여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기도 하고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차이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함.

공대 정 :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음. 시행세칙 상 제가 찬반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는데, 단지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은 질의사항에 대한 안건의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재료 부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나 산공 정님께서 추가 질의해주신 부분들은 찬반 토론의 일부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는 질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찬반발언도 함께 받도록 하겠음. 저는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가 들어올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충만 진행하도록 하겠음. 재료 부님 반대발언 남기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재료 부 : 네.

공대 정 : 그렇다면 이어서 찬반토론 진행하겠음. 발언하실 단위는 손 들어주시기 바람.

전기 부 : 재료 부님 질의에 따른 공대 정님의 답변에서 출석한 대의원 수에 따라 의견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불공정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참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 여부에 따라 의견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되지 않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이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다보면 공과대학 측에서 각 학과나 학부에 요청하거나 전달해야할 사안이 있을텐데 만약 각 학과나 학부에서 두 대표자 중 한명만 참여 가능하다면 각 과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회장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각 학과나 학부의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공과대학 측과 엮이는 사업들이 많을텐데 아무래도 공운위 특방이 있고 그곳에서 공지나 회의 결과들이 전달되고 있긴 하지만 직접 회의를 참여하면 구두로 요청사항들을

듣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비대면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받는 것은 크게 다르게 체감이 될 것. 그렇기에 학과나 학부 사업에도 한명만 참여하게 될 경우 지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함. 이에 반대 발언 남김.

공대 정 : 반대 발언에 대한 추가 의견은 아니고, 제 발언에 대한 전기 부님 발언에 대해 한 가지 정정하고자 함. 전기 부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 기구인만큼 표결의 가부 결과를 따지기 전에 운영위원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학생회의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함. 불참하는 것은 일종의 의사 표현인 것이 아니라,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개회되고 의결이 시작되는 것 자체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 되고 본 안건을 말씀드린 것은 이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을 때 그 회의 절차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하였음.

원핵 정 : 하나씩 말씀드리겠음. 산공 정님이 부학생회장도 학과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갖는 직책이기 때문에 부학생회장들의 의결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라 이해함.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비단 다른 운영위원회들도 마찬가지로 안건이 상정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기 3일 전 또는 최소한 하루 전까지 안건이 공개가 됨. 그 경우에 사실 각 안건에 대해 합의를 보고 와야 하는 것은 과반 단위 학생회장단의 의무라고 생각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학생회장단이라는 것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단위의 대표인 것은 아니고, 학생회장단 전체가 과반 단위 학우들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성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의견이 다른 상황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둘이 합의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근데 이 부분은 물론 학생회장단이라는 단위 자체가 어떤 과반 단위 전체의 의결권을 대리하느냐 혹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각 서로 다른 의결권을 대리하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 부분인 점에는 동의하지만 일단 저는 학생회장단이라는 것은 둘이 함께 하나의 과반 단위 의결권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의결권이 합치가 되는 상황이 더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인원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 구조보다는 학생회장만 인정을 하고 유사시에 부학생회장에게 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의 방향성이 더 옳다고 생각함. 또한 이 측면에서 재료 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인원 수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에 대해 반대 발언을 남겨주셨는데, 이미 시간을 정하고 규정해놓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니까 참석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함. 그러나 이는 사실 조금 원론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임.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작게 보면 한 기수 동안 어떠한 운영위원회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태가 구조적인

결합이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회장단들이 전원 매번 모든 공운위를 참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한다와는 별개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오히려 개정안의 취지대로 학생회장만을 인정하고 유사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의결권을 대비할 수 있는 형태가 훨씬 구조적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전기 부님께서 말씀해주신 측면에서도 비슷한 맥락인데 부학생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 사실 참관권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부학생회장이 어떤 안건에 대해 공운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다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과반 단위 학생회가 어떤 결정을 어떠한 식으로 해나갈 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한다면 참관을 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공운위 특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장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부학생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공운위 특방에는 부학생회장단들도 모두 남아 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측면에서 업무의 과중을 논하는 것은 언제 한번 공운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반 단위 학생회장단 내부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원핵 정 : 요약하자면, 의결권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동의함. 그런데 그렇게 논쟁적인 안건이 있다면 하나의 과반단위 학생회장단이 공통으로 대표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학생회장단이 어떤 과반 단위의 의견을 통합해서 와야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 의결성이 합치되는 상황이라면, 또는 합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원 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어떤 숫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적 상태가 분명히 결합이 있음. 그 이유는 사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과대학 학생회 측에서 오히려 구조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학생회장의 업무 과중 문제 혹은 부학생회장의 공운위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부학생회장이 특방에 남아있을 것이고 또한 대리도 할 수 있고 참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이상으로 찬성발언 남김.

**19:01 전기 4학년 룰루반 입장**

**19:02 전기 4학년 R반 입장**

건환 2학년: 반대발언. 공운위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당연히 의결에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의결권만 관련해서만 논의되는 것 같음. 본 회의에서는 의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견 개진이나 회칙 상에도 제27조를 보면 집행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 의결권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각각 과를 대표해서 어떻게 낼 지는 단순히 찬반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2인이 낼 수 있는 의견을 굳이 1인으로 줄이는 개정이 필요할 지 의문이 듦.

화생 정 :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학생회장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아까 원혁 정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찬성발언 남김.

항공 정 : 개정이 된다면 부학생회장이 함께 참가하는 경우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될텐데 그 경우 인원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공대 정 : 인원 수 말씀하신 것이 정족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사정족수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수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항공 정 : 알겠음. 저는 찬성발언 남기겠음.

재료 정 : 회의의 편의성을 위해 투표권을 줄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발언 남기겠음.

원혁 정 : 우선 건환 2학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의결 기능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으나 공운위의 기능은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이 개정안 자체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함. 다른 공운위의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에 일단은 말을 아끼겠음. 부학생회장의 공운위 배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제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주셨으면 함. 또한 재료 정님 발언에서도 회의의 편의성을 위해 투표권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단순히 회의의 편의성을 위해 투표권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장만으로 이 상황을 정의하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 논리대로라면 모든 안건을 공운위가 아니라 공학대회나 공대 학생 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읽힘. 투표권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과반 단위 전체 의결권이 하나로 합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의 의결권을 생각했을 때에는 투표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문장만 봤을 때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현 상황에 적합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음.

재료 1학년 : 다른 모든 단과대학이 학생회장만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도 개정 취지에서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과대학보다 소속 학부가 많은 단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운영위에서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공과대학에서는 부회장도 참여하는 것이 공과대학에 속한 학부 자체가 평균적으로 인원이 많아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학생회장 하나만으로 학부 하나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기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근거로서는 살짝 옳지 않다고 생각함. 아까 재료 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자면 인원이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신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운영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었는지는 대표들이 얼마나 대표했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함. 과연 인원이 적으니 회의의 성과를 고려했을 때 효율성이 담보가 되는가, 또 효율성을 찾다가 회의의 효과를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반대되는 게 있음.

공대 정 : 사실관계에 대해 두가지만 정정하겠음. 우선 공대보다 학부 단위가 많은 단과대학으로 사범대학이 있는데 사범대학은 15개의 단위 모두 학생회장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는 점 말씀드릴. 또한 본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태생 시기에 학생회장만 의결권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부학생회장이 추가된 것임을 말씀드릴.

산공 부 : 원핵 정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와 정의 의견이 학생회장단의 의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왜냐하면 두명이 동시에 과나 반을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공운위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과반 단위에 대해 동등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대의 구성원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함. 이에 반대발언 남김.

화생 정 : 찬반 의견 남긴 후에 질의 하나 남기겠음. 우선 재로 1학년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구성원이 많다는 점과 부학생회장이 논의에 참여한다는 점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 산공 부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서로 개별적인 학생회가 아닌 한 학생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임. 만약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그 학생회를 대표하는 의견은 없는 것이기에 기권을 하거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의견은 여기까지고, 질의사항이 있는데 혹시 공과대학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정할 때 부학생회장까지 포함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공대 정 : 화생 정님 질의사항에만 답변 드리겠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회장만 있다가 부학생회장이 추가가 된 것이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음.

재로 1학년 : 아까 공대 정님께서 사범대학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미했던 것은 화생 정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학부나 학과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한 학과/부 내 평균적인 인원 수를 말씀드린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충하고 싶음.

원핵 정 : 우선 재로 1학년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대의원 제도에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음. 공과대학의 학과나 학부 수가 아니라 소속된 평균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공과대학만큼 단과대학 내의 학과나

학부 간의 평균 인원 수 차이가 심한 단과대학이 있을까 싶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많은 학부, 과의 인구 비례로 의결권을 가게 하는 비례대의원 제도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마찬가지로 단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평균적인 인원 수로 보더라도 총운영위원회에서는 공대 학생회장과 수의대 학생회장(예시로 든 것임.)이나 치대 같은 학생회장 분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의 의결권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굳이 왜 공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상급 단위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계속 다른 단과대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공대가 바뀔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기억함. 그 점에 대하여, 공대 학생회칙 부칙 제3조에 보면 학생회칙 상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총학생회칙이나 관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음. 물론 이 부칙에 의거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던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부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정 의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음. 서울대 학생 사회 자체가 나아감에 있어서 단과대별로 학생 사회의 구조가 너무 많이 다르다면 전체 학생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과대 학생회칙마다 다 적혀있는 부칙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부학생회장이 의결권을 인정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체 학생 사회 구조에 맞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 그리고 학생회장단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무조건 합치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동의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에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무조건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학생회장단이라는 것이 각 과반의 학생회칙을 보았을 때 본회의 의결권을 대비하여 공운위나 상급 단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부분의 과반 단위가 학생회장단을 묶어 그 단위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합치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긴 함. 무조건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원 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모든 과의 의결권을 동일하게 설정한다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 명으로는 대표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인원 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두명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라면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의결권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학생회장단 내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 맞음. 업무나 행정적인 면에서 학생회장단 내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의아한 면이 있음.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고 의결권만 제한을 하는 상황에서 인원 수가 많다거나 하는 점들이 이 안건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타 단과대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다른 단과대학들이 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면이 아니라 개정 취지에서 간단하게 적혀 있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학생 사회 자체가 하나의 공통된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성 만큼은 동일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릴.

공대 정 :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 본 안건의 발제자로서 안건 취지에 대해 한번 더 강조드린 후에 최대 10분 간 찬반토론을 가져본 후 바로 표결로 넘어가겠음. 본 안건을 발제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공학대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단위의 의결 기구라는 것임. 그리고 이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진행이 되어야 하고, 회세칙특위에서도 논의되었지만 현재 학생회장단이 모두 참석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매주 1회 꾸준히 진행되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충, 강조드림.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3분인데 33분까지 좀 더 발언 들어보고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음.

원핵 정 : 공대 정님 발언에 첨언.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던 것 같은데 이것이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워딩 때문에 받아들이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대 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의결권이 합치되는 것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부학생회장을 포함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운위원이 공운위에 매번 참석해야 하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며, 실질적으로 그러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 상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 단일 의결권을 쪼개서 정족수를 늘려서 운영위원회의 개회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생각함.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볼 것은 학생회장단 간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합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중 하나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공과대학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정족수를 너무 관대하게 설정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더 큰 구조적 결함인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이 학생회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

전기 1학년 C반 : 제가 지금 1학년이라서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공대 운영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얼마나 몇번 개회에 실패하였는지 질의.

공대 정: 이 부분은 본 안건과 별개로 제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보충설명 드림. 저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상 운영위원회가 매주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운영 방향이라 생각하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가 매번 무조건 이루어지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아까 재로 부 말씀대로 미리 정기 회의 시간을 정하긴 합니다만 다양한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해진 시간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힘듦.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매주 참불수합 투표를 받을 때 정족수를 넘길 수 있는 지를 보고 만약 미달되어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면 참석을 독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래서 원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현재까지 정족수 미달로 개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딱 한번 존재함.

기계 정 : 현재까지 총 22번의 운영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회가 안된 적이 한번 뿐이었고 심지어 개회가 안되었을 때도 임시 회의를 통해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회가 안되어서 효율성 때문에 부학생회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공대 정 :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개회가 안 된 것이 한번인 이유는 제가 폐회가 될 몇번씩의 운영위원회 위기 때 꾸준히 참석을 독려했기 때문임. 현 체제가 타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환 2학년 : 찬반발언은 아니고 질의 하나. 개정 이전의 문구를 보면 제25조에서 2인이 참석하여도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현재는 2인이 참석할시에 의결권이 2인에게 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

공대 정 : 해당 조항은 부학생회장이 2명이 있는 단위에 적용되는 조항임. 현재로서는 단위마다 학생회장 1명, 부학생회장 1명으로 의결권이 인정되기에 부학생회장이 2명인 단위는 둘 중 한명만 해당 회의에서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임.

전기 부 : 반대발언 남김. 아까 원혁 정님께서 공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총학생회칙 또는 관례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조항은 현 공과대학 학생회 측에는 정, 부 둘다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본 안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현재 공과대학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기에 굳이 총학생회칙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아까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가치 판단에 대해 공대가 무조건 총학의 가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또한 효율성을 위해 기존에 주어졌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하는 학생 사회에 있어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됨.

원혁 정 : 우선 신상발언은 아니고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 총학생회칙이나 관례를 따르는 것이 본 안건과 관련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함. 그래서 그 해당 부칙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 그 조항이 제정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함. 그렇기에 저는 그러한 조항이 왜 있을 것이냐, 서울대학교 내 학생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 부칙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겠냐 사실 모든 단과대학이 구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그렇기에 개정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조항이 이번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아까도 말씀드림. 또한 공대 측이 총학의 가치 판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동의함. 제가 가치 판단 때로 말씀드린 부분은 학생회장단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음. 또 효율성을 위해 기존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반에 있어 반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말씀은 특정 개인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음. 왜냐하면 어떤 의결 제도가 변화할 때 당연히 의결권을 부여받는 대상이 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너무 과한 비약이지 않을까 싶음.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합치 관련 내용은 사실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학생회장단 의견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거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는 점을 붙이고 있는 것임. 이 두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의결권 박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의 과반 단위 의결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음.

공대 정 :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두분 의견만 들어보고 바로 표결 진행하겠음.

재료 부 : 원핵 정님께서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대부분의 경우 학년이 다른데 저는 한 학과당 몇백 명이 넘어가는 공대 학과 특성상 학년별로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그렇기에 학년별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려면 학생회장단의 학년이 다른 경우에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최종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리겠음.

원핵 정 : 학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됨. 학년별로 다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학년 대표의 의결권이 인정되어야 함. 학생회장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2명, 많아야 3명, 일반적으로 2명인데 그렇다면 반영되지 않는 학년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 대해 오히려 지금의 형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학년별로 다른 의견을 하나의 학생회장단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려면 모든 학년별로 학생회장단이 있어야 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년별 의결권을 말씀하시는 것은 과반 단위 전체를 대표하는 학생회장단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함.

공대 정 : 시간이 다 되어 표결 진행하겠음. 표결 진행하는 동안에는 인원 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장 및 퇴장을 제한하고 있음. 표결 독방에 투표 올리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권의 선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의원 전부가 투표해주셔야 함. 올려놓고 1~2분 기다리겠음.

### 19:35 표결 시작

(누락) :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하면 안되는 것인지?

공대 정 :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임. 시행세칙에 따르면 투표하신 단위를 전부 속기록에 남겨야 함.

### 19:36 표결 종료

찬성 : 공대 정, 공대 부, 건환 부, 건환 부, 기계 정, 기계 1학년 A반, 예자 정, 예자 2학년, 원핵 정, 원핵 부, 원핵 4학년, 전기 4학년 롤루반, 전기 3학년 롤루반, 컴공 정, 컴공 부, 컴공 4학년, 컴공 3학년, 컴공 2학년, 컴공 1학년, 항공 정, 항공 2학년, 화생 정, 화생 2학년 A반, 화생 2학년 B반, 화생 1학년 Acid반

반대 : 건축 1학년, 건환 2학년, 건환 1학년, 광역반, 기계 부, 기계 2학년 B반, 기계 1학년 B반, 산공 정, 산공 부, 산공 부, 산공 3학년, 산공 1학년, 예자 1학년, 원핵 1학년, 재료 정, 재료 부, 재료 부, 재료 2학년, 재료 1학년, 전기 부, 전기 4학년 R반, 전기 3학년 R반, 전기 1학년 R반, 전기 1학년 C반, 전기 1학년 띠라반, 조선 정, 조선 2학년, 항공 1학년, 화생 부, 화생 1학년 Base반

기권 : 건환 정, 기계 2학년 A반, 기계 1학년 C반, 산공 2학년

**[논의안건 1] 재적 단위 59인 중 찬성 25표 / 반대 30표 / 기권 4표로 부결.**

공대 정 : 의사진행발언. 논의 및 의결 안건 2~4번이 회칙개정안 특성상 1번이 가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작성된 것임. 안건 1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2~4번 자동 부결 처리 하고 하반기 공학대회 등으로 안건을 재상정하도록 하겠음.

**[논의안건 2~4] 의장 판단하에 만장일치 부결.**

공대 정 : 논의 및 의결 안건은 여기까지 하고, 심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음.

### **심의안건 1. 2022년 2기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공대 정 : 심의안건은 회순으로 다섯 번째임. 페이지 번호 66페이지 참고할 것. 심의안건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2022년 2기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에 대한 심의임. 첫 페이지에 산입지출요약이 명시되어 있음. 공과대학 학생회는 00통장을 학생회비 통장으로, 두번째 페이지에 있는 74통장을 특정 사업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산입 및 지출 내역을 작성하였음. 항목별 요약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람. 또 봐주셔야 할 것이 1번 안건에 대한 별첨 자료가 있는데 76페이지부터 2022년 2기 통장 세부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질의하실 단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계 정 :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관련. 왜 논의안건 3번 연합전공생의 학생회원권 부여는 논의 안 하는지?

공대 정 : 아마 논의 안건 3번의 개정 전후 조항이 안건 1번 부결과 직접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음. 그러나 회세칙특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했던 순서 등을 고려하면 조항 상의 배치가 없더라도 첫번째 개정안이 부결되면 후의 안건들 역시 부결 처리 후 하반기 등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음.

### 19:38 전기 1학년 R반 퇴장

전기 3학년 룰루반 : 67페이지의 74통장 지출요약에 가을축제 후원금이라고 나와있는데 후원금이 왜 지출로 되어있는지?

공대 정 :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드리고 사실 확인 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지하겠음. 제가 아는 바로는 저 후원금을 당시 가을 축제의 기획사 대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통째로 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전기 3학년 룰루반 : 알겠음. 다만 문구 자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정정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공대 정 : 자료집 정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음.

공대 정 : 추가 질의 있으신 단위 손 들어주시기 바람. 시간 2분 정도 더 드리겠음.

공대 정 : 질의 없는 것 같아 표결 진행하겠음. 마찬가지로 표결 진행 중에는 입장, 퇴장 불가.

### 19:43 표결 시작

### 19:44 표결 종료

[심의안건 1] 재적 단위 58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

(만장일치이므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에 대한 대의원 명단 생략함)

### 심의안건 2. 2023년 1기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공대 정 : 다음 심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겠음. 자료집 페이지는 72페이지임. 이번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임. 00통장의 예상 지출, 74통장의 예상 수입 및 지출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이경우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이므로 별도의 별첨 자료는 없음. 우선 질의 있으면 질의부터 받겠음.

재료 부 : 모기 잡아드림 사업에 5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품목에 대한 예산인지 질의.

공대 부 : 현재 이 사업을 진행 중인 팀에서 물품들을 알아보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모기의 완전한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식이 되어 곳곳에 모기를 손쉽게 퇴치할 수 있는 살충제나 에어 커튼 등을 구매할 생각이 있어 우선 전체 예산을 잡은 후에 그 금액에 맞는 최적의 물품을 구매할 듯함.

전기 3학년 룰루반 : 예산안 자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표의 항목이 다른 셀에 적혀있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적은 것인지?

공대 정 : 그러함. 예전 공학대회 자료들 참고하였음.

공대 정 : 1분 더 기다려보고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으면 표결 진행하겠음.

공대 정 : 질의 추가로 없는 것 같아 1번과 마찬가지로 표결 진행함.

**19:48 표결 시작**

**19:50 표결 종료**

**[심의안건 2] 재적 단위 58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

(만장일치이므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에 대한 대의원 명단 생략함)

**심의안건 3. 2023년 공과대학 새맞이 준비위원회 결산(안)**

공대 부 : 심의안건 3은 2023년 공과대학 새맞이 준비위원회 결산안임. 이 부분은 이미 결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두가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 내역의 경우에는 별첨 3번의 표를 확인하기 바람. 질의 있는 단위?

**19:52 화생 2학년 A반 퇴장**

**19:53 항공 정 퇴장**

**19:53 항공 2학년 퇴장**

원핵 정 : 수입 항목 중 몬스터, 상쾌환 협찬은 따로 광고 비용은 지급되지 않았는지?

공대 부 : 협찬비 따로 없었음.

전기 부 : 질의드릴. 기획사 비용에 숙박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저희가 새터 행사를 델피노 리조트에서 진행한 바 있음. 그런데 이번 새터에서 적자를 예상하였을 때 과연 델피노 리조트가 최선의 선택이었을 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찾을 수는 없었는지 질의.

공대 부 : 숙소 선정의 경우에는 새준위에서 일일이 모든 숙소를 알아볼 수 없어서 기획사 측에서 추천해주신 숙소 중 직접 선택하는 방안으로 진행. 당시에 새터 일정으로 확정되었던 2/20-22 중 대여가 가능하고 공대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델피노 리조트뿐이었음.

재료 부 : 내부 사정 몰라서 질의. 지출 내역에 주류업체 대금은 돈을 지급하고 주류를 구매한 것인지?

공대 부 : 다른 식사라던지 숙박같은 부분들은 기획사에서 처리해주심.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연결이 불가능해 저희가 따로 주류 업체에 연락하여 직접 구매하였기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해서 작성하였음.

재료 부 : 그렇다면 광고 대행사 300만원은 주류 업체의 광고 비용이었는지? 아니면 제 기억 상으로 주류 업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광고에 대한 계약금으로 들어간 것인지?

공대 부 : 일단 수입 항목의 광고 대행사 계약금의 경우에는 새터 책자 업체에서 기업들의 광고를 책자에 수록하는 대신에 광고비를 받아 저희에게 지급한 비용임. 당시 행사를 진행했던 주류 업체는 하이트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이트진로에서는 경품 추첨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주셨고 금액에 대한 지원은 없었음.

산공 정 : 공연 동아리 지원금이 785,000원인데 혹시 어떻게 쓰였는 지?

공대 부 : 저희가 총 8개의 동아리를 공연 동아리로 선정했는데 한 동아리 당 기본적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고 동아리 당 인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하시는 인원 곱하기 5천원 씩을 지급하였음.

산공 정 : 그 5만원은 어떻게 쓰인 것인지?

공대 부 : 5만원은 그냥 한 동아리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음.

산공 정 : 추가 질의. 공연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돈을 내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참가비를 내고 다시 지원금을 받은 것인지?

공대 부 : 맞음. 처음에 우선 참가비를 걷었고 새터가 진행된 이후에 동아리별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전기 3학년 롤루반 : 수입과 지출 항목에 각각 근장비 가집행과 근장비 가집행 환급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행정실에서 돈을 빌렸다가 다시 돌려준 일인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대 부 : 수입 중 광고 대행사 계약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그 300만원은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지불되어 기획사 대금 지출 시 잔액이 부족하였음. 이에 근로장학금 200만원을 가집행하여 기획사 대금으로 지출하고, 광고대행사 계약금이 지급된 후에 근로장학금 비용을 다시 근로장학금 통장으로 지출한 것임.

공대 부 : 추가 질의 있으신 단위? 없는 것 같아 심의안건 3에 대해 표결 진행하겠음.

#### **19:58 표결 시작**

공대 부 : 전기 부 중간에 퇴장하셨으므로 표결 참여 불가함.

#### **20:00 표결 종료**

**[심의안건 3] 재적 단위 5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

(만장일치이므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에 대한 대의원 명단 생략함)

공대 정 : 심의안건이 본 회의 식순의 마지막이었음. 이상으로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 대표자회의를 20:00자로 폐회함.

#### **20시 00분 폐회**